

석사학위논문

이연법인세의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김혜경

2004년 12월

# 이연법인세의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도교수 이 상 봉

김 혜 경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혜경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4년 12월

#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ormation Effects of Deferred Taxes

Hye-Kyou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Sang-Bong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04.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ang-Bong Lee, Prof. of Accounting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이연법인세의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 개 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회계정보와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회계정보 중 어느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단순이익자본화모형과 Ohlson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가 투자자에게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어지는지를 검증해 보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연법인세의 발생액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하고 현금흐름과 회계이익 중 어느 것이 투자자들에게 더 유용한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회계정보가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회계정보보다 주가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둘째, 이연법인세차는 투자자에게 자산으로 인식되어지고, 이연법인세대는 투자자에게 부채로 인식되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연법인세의 발생액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의 발생액에 무관하게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회계이익이 주가에 대한 높은 가치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는 이연법인세회계를 통한 이익정보가 추가적인 정보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글색인어 : 이연법인세, 단순이익자본화모형, Ohlson모형, 가치관련성

#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동기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2
II. 이연법인세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4
1. 이론적 배경	4
2. 선행연구의 검토	20
III. 연구가설의 설정과 연구설계	29
1. 가설 설정	29
2. 연구설계	31
1) 이연법인세의 정보효과에 대한 검증모형 및 변수 정의	31
2) Ohlson모형을 이용한 이연법인세 정보효과 검증모형 및 변수정의	33
3)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성 검증모형 및 변수정의	35
4) 이연법인세 발생분류에 따른 이연법인세 정보효과 검증모형 및 변수정의	36
3. 표본 선정	38
IV. 실증분석결과	41
1. 기술통계	41
2. 상관관계분석	43
1) 이연법인세 반영·미반영 변수들의 상관관계	43
2) 이연법인세차·대 발생기업의 변수간 상관관계	44
3)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46

3. 회귀분석결과 . . . . .	48
1) 이연법인세 반영·미반영 주당순이익의 주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 . . .	48
2) Ohlson 모형의 초과이익과 장부가치의 주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 . . .	50
3)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 . .	51
4)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간의 회귀분석결과 . . . .	53
 V. 결    론 . . . . .	 56
 참 고 문 헌 . . . . .	 58



## - 표 목 차 -

<표 1> 미국의 법인세기간배분회계규정의 변화 내용 . . . . .	7
<표 2> 법인세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 . . . .	10
<표 3> 한국·미국·국제회계기준의 이연법인세회계 대비표 . . . . .	15
<표 4> 표본기업의 연도별 현황 . . . . .	39
<표 5> 업종별 기업현황 . . . . .	40
<표 6> 변수들의 기술통계 . . . . .	41
<표 7> 이연법인세 반영·미반영 변수들의 상관계수 . . . . .	43
<표 8> 이연법인세차 발생기업의 변수간 상관계수 . . . . .	45
<표 9> 이연법인세대 발생기업의 변수간 상관계수 . . . . .	45
<표10>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의 변수간 상관계수 . . . . .	47
<표11> 이연법인세가 작은 기업의 변수간 상관계수 . . . . .	47
<표12> 이연법인세를 반영·미반영한 주당순이익의 주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 . . .	49
<표13> Ohlson 모형을 이용한 주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 . . .	50
<표14> 이연법인세차·대를 추가한 주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 . . .	52
<표15>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간의 회귀분석결과 . . . . .	54

## Abstract

#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ormation Effects of Deferred Taxes

**Hye-Kyoung Kim**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d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uses an earnings capitalization model and the Ohlson model to prove whether the earning that reflected deferred taxes or those that did not reflect deferred taxes provides more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In addition, it investigates whether investors view the deferred tax asset as a real asset and the deferred tax liability as a real liability. Also, it proves whether cash flow or EPS including deferred taxes provides mor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accounting information by classifying firms by accruals of deferred tax amou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PS including deferred taxes can explain the behavior of security prices better than EPS excluding deferred taxes.

Second, Investors recognize deferred tax asset as a real asset whil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deferred tax liability as a real liability. Finally, in case of classified firms by accruals of deferred tax amounts, EPS including deferred taxes provides the relative value-relevant information about security prices regardless of size of accruals of deferred tax amounts. These results show earning that reflected deferred taxes has an additional information contents.

Key Words : deferred taxes, the relative value-relevance, security prices, EPS(earnings per share)



# I. 서 론

## 1. 연구동기 및 목적

이연법인세회계제도는 1996년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1998년 4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기업의 경우 1999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부터 이연법인세를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개정 전까지의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된 당해연도의 법인세와 주민세 등의 합계액을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법인세비용이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실제 납부액, 즉, 현금주의에 의해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발생주의적 관점에서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되지 못하고, 재무제표 상에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왜곡표시 된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져 왔다.

그 후 이연법인세 회계의 도입여부 및 정보내용에 대하여 회계실무계와 회계학계에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1996년 기업회계기준 개정시 회계기준의 국제적인 정합성과 손익계산서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잘 부합되는 이익정보가 반영되고,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가 적절하게 평가되어 대차대조표에 계상됨으로써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거로 이연법인세회계가 도입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연법인세회계가 실제로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 즉, 회계

정보로서의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회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제고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연구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의미 있는 결론을 부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연법인세가 반영된 회계정보와 이연법인세차·대의 정보내용이 회계정보로써 유용한 정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이익정보와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이익정보 중 어느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검증한다. 이를 위하여 Ohlson모형에 의해 계산되어진 초과이익과 장부가치를 이연법인세 반영 또는 미반영으로 나누어 과연 어느 정보가 기업가치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이연법인세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제시하는 것과 같이 이연법인세차·대가 각각 자산과 부채로써 정보 이용자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셋째, 이연법인세로 인해서 이연법인세를 반영하기 전과 반영한 후의 회계이익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연법인세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과 이연법인세를 적게 발생시키는 기업으로 분류하여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시 현금흐름정보와 이익정보 중 어느 정보를 보다 더 중요한 정보로 이용하는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였다.

제 II 장은 이연법인세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이연법인세회계제도 도입의 의의, 이연법인세회계가 처음 시행하였던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연법인세회계제도의 비교, 이연법인세차·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이연법인세의 인식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이연법인세회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대한 연구와 이연법인세회계 정보유용성에 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행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표본의 선정 및 변수를 정의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제 III 장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한 그 실증결과를 보여주고 그 결과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제 V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며, 논문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Ⅱ. 이연법인세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 1. 이론적 배경

#### 1) 이연법인세회계의 의의

이연법인세회계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 이익 즉,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과세표준의 차이 중 일시적차이에 대한 세금효과를 적절히 회계기간별로 배분하여 인식하는 법인세기간배분회계를 말한다. 이연법인세회계에서는 법인세의 본질을 이익처분설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기간비용설에 따라 해석한다. 즉, 법인세의 본질을 이익의 처분이 아닌 기간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법인세도 다른 비용과 같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을 동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기업회계상 수익·비용인식기준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 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부담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과정이 이연법인세회계의 대상이 된다.

발생주의에 충실한 법인세기간배분회계에서는 기업회계상의 법인세비용이 세무회계상의 법인세부담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부채)를 계상하고, 법인세비용보다 법인세부담액이 많을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차(자산)를 계상한다. 이때 '법인세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회계 이익에 대응하는 금액이고,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다.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비용이 회계이익과 일정한 관계로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충실하고 기업의 수익력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특정연도의 회계이익에 영향을 미친 거래는 법인세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이익측정이 가능하다. 셋째, 회계정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된다. 넷째, 이연법인세를 자산·부채로 계상함으로써 대차대조표에 재무상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다.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적차이의 미래 해소(reversal)가능성 및 미래의 세율변동 등에 대하여 추정이 개입되므로 기업의 임의성이 개재될 여지가 있다. 둘째, 법인세비용은 일시적차이뿐 아니라 영구적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법인세기간배분회계는 일시적차이로 인한 영향만을 유연화하므로 결국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절차가 복잡하므로 비용-효익관계에 비취볼 때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 2) 미국의 법인세기간배분회계

법인세 기간배분회계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온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법인세 기간배분회계는 회계원칙심의회 의견서 제 11호(APB Opinion No.11)를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으나,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FASB)보고서 제 96호(SFAS No.96)가 1987년 말에 발표되면서 이를 대체하였다. 그리고 1992년 2월 SFAS No.109가 발표되면서 다시 SFAS No.96을 대체하였으며 동 규정은 1992년 12월 15일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다. SFAS No.96은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시행일 이전에 SFAS No.109

에 의해 대체된 것이며 이는 법인세기간배분회계가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SFAS No.96의 경우 향후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금효과인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계의 반발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FAS No. 109가 제정된 것이다. 미국의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규정의 변화내용은 <표 1>에서 제시되어 있다.

법인세회계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에서 제12호(No.12)에 규정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 No.12는 총 56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9문단까지는 서두로서 법인세 기간배분회계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가 국제회계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와 관련된 규정이다. 이 기준의 서두에서는 법인세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을 지급세액인식법(taxes payable method)와 법인세영향인식법(tax effect accounting method)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지급세액인식법(taxes payable method)은 세법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회계 방법이다. 따라서 기간적 차이(timing difference)에 의한 세금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이 방법은 법인세를 기업의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익의 배분(distribution of income)으로 보는 개념이다. 그러나 법인세는 비용으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기간적 차이의 세금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발생주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인세영향인식법(tax effect accounting method)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이익의 발생기간에 인식하여야 할 비용으로 계상하게 된다. 따라서 기간적 차이에 의한 영향을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과 대차대조표상의 이연법인세계정에 포함시킨다. 국제회계기준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설

명한 이연법(deferred method)과 자산·부채법(asset-liability method)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표 1> 미국의 법인세기간배분회계 규정의 변화내용

구 분	SFAS No.109	SFAS No.96	APB Opinion No.11
1. 방법	자산·부채법	자산·부채법	이연법
2. 목적	① 당해연도의 지급 또는 환급세액을 인식 ② 재무제표 혹은 세법상 인식된 사건의 미래 세금효과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인식	재무제표 또는 세법상 인식된 사건의 결과 재무제표일 현재 지급·환급.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함.	법인세비용과 세전 이익을 대응
3. 초점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4. 미래사건에 대한 고려	현존하는 세금혜택은 미래의 과세가능이익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함. 즉, 이연법인세부채의 실현, 미래의 과세이익, 절세방안 등을 고려해야 함.	인정 안 됨.	자산의 인식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정 안 됨.
5. 측정	적용가능한 세율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현존하는 일시적차이를 실현, 결손금 공제 등에 의존하여 계산된 세금효과를 인식	당해연도 발생한 일시적 차이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차이를 근거로 인식
6. 세율의 변화	세율변화에 대한 영향을 반영함.	SFAS No.109 동일	반영하지 않음.
7. 이연법인세 자산	모든 공제가능한 일시적차이와 결손금이월공제액을 인식함.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평가충당을 설정.	현재 또는 과거에 납부한 세액이 실현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능한 일시적차이를 인식함.	일시적차이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차이를 근거로 인식
8. 이연법인세 부채	미래에 과세되는 일시적차이를 인식	SFAS No.109 동일	인식 안 함.
9. 결손금이월 공제 자산 인식	실현가능하다면 인식함.	인식 안 함.	실현이 확실한 경우 인식함.

국제회계기준은 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해 법인세영향인식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연법 혹은 자산·부채법 중 선택하여 사용하고 그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기간배분회계는 미국의 회계원칙과 국제회계기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3월 30일자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법인세기간배분회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3)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법

#### (1) 1996년 기업회계기준 개정 이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에는 1976년 기업회계원칙의 제정 이후 1996년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법인세가 이익처분이냐 당기수익에 대한 비용이냐에 관한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 즉 일시적차이에 의한 세효과를 기간배분을 하여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기업회계원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였다.

1981년에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당기순손익은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서 당기부담분에 속하는 법인세·주민세 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이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① 이연법인세를 반대하는 입장(이익처분설)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법인세를 비용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법인세는 현금주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연법인세를 비용이 아닌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이라고 봄으로써 법인세는 회계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기간 배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인세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과세소득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회계이익과 관련 지을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이연법인세를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1994년 이루어졌던 세법 개정처럼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세무조정 항목을 줄이거나 조정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 대신에 이와 상이한 법인세비용으로 보고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들이 이연법인세회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걱정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이연법인세회계는 법인세를 차기 이후로 배분함으로써 이익 유연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태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연법인세회계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 ② 이연법인세를 찬성하는 입장(비용설)

이연법인세를 찬성하는 입장은 법인세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응하여 기간 비용화 시켜야 한다는 비용설의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즉 법인세는 순 자산의 감소를 불러와 비용화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세는 기업의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 내에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발생주의 관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반대하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우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분석했듯이 세무조정을 통한 양 회계간의 차이 조정은 그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 대신 법인세비용을 보고함으로써 올 수 있는 혼란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끝으로, 이연법인세회계는 법인세를 차기 이후로 배분함으로써 이익 유연화 가능성이 있어 기업의 경영상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익처분설의 주장에 대해 비용설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응시킴으로써 기업 경영상태의 합리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법인세를 기간비용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법인세는 발생주의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만 재무제표의 적정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 (2) 1996년 기업회계기준 개정 이후

이상과 같은 논쟁이 계속되어 1996년 3월 아래의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법인세의 성격이 이익의 처분이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기간수익이 부담할 비용이나 논쟁의 여지를 없애고 법인세를 당기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확고히 규정함으로써 법인세 기간배분 회계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표 2>법인세 관련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9조(법인세등) 법인세등은 당해 회계연도의 법인세, 주민세등으로 한다.	제59조(법인세비용) ①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법등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인세에 부가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제90조(당기순손익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60조(당기순손익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그 동안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이연법인세차와 대)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5-52】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제회계기준의 규정내용 및 규정방식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적용을 위한 지침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 위원회에서는 법인세 관련 회계처리에 관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추구하고 기존 해석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업회계기준서제16호 법인세회계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조사연구실은 조사연구실의 연구검토결과와 외부의 검토의견, 국제회계기준 제12호와 미국의 FAS No.109 등 외국의 회계기준과 연구문헌 등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기초안을 작성하였다. 기초안은 2002년 10월 18일의 토론회에서 나온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고 한국회계연구원 내부의 검토과정과 의견조회기관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공개초안의 시안으로 확정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2003년 9월 19일에 조사연구실이 작성한 공개초안 시안의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차례의 심의를 거쳐 2004년 2월 13일에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16개의 기업회계기준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4년 5월 19일까지 의견조회기관으로부터 5개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반영하여 제정안을 확정하였다.

대부분의 회계사건에 의한 결과는 그 회계사건이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회계연도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쳐 세금효과가 그 해에 나타난다. 그러나 어떤 회계사건의 결과는 이연되어 미래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세금효과도 이연된다. 이러한 법인세의 이연효과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방법은 이연법에 의해 인식하는 방법과 자산부채법에 의해 인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각 방법에 따라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항목의 개념적 본질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자산부채법에 의한 법인세회계에 의하여 인식되는 계정들이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정의 보다 일관성이 있다. 또한 자산부채법은 유용하고 이해가능성이 있으며 이연법보다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 현행 해석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자산부채법”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연법의 논리를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부채법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현행 법인세회계의 내용과 해석의 논리를 수정하였다.

이연법에 의한 법인세회계의 목적은 회계상 세전이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관련 법인세비용을 대응시키는 것이다. 즉, 회계상의 세전이익에 영구적차이를 반영한 금액을 근거로 법인세비용을 산정하고 이 금액과 법인세부담액의 차이인 이연법인세를 대차대조표에 이연하여 두었다가, 향후 기간적차이가 소멸될 때 마다 해당액을 상각 또는 환입하여 소멸시점의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할 경우 이연된 법인세효과에 향후 세율이나 세법의 변동효과가 반영되지 않으며,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미래에 경감되거나 부담할 법인세부담액을 표시하지 못한다.

국제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시에 나타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도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최초 인식 거래가 기업결합거래가 아니며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과 그 이후의 기간에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그와 같은 상황은 종래 이연법의 관점에서는 취득이후에 발생하는 영구적차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만일 취득 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서 이연법인세비용을 당기의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면 자산의 취득행위가 손실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

으며, 이연법인세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한다면 자산을 과대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연법인세인식의 예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참고로 2004년 4월 현재 IASB는 미국기준과의 정합성 추구의 차원에서 최초인식 예외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결손금 등은 미래의 과세 소득과 법인세 부담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미래의 현금흐름 창출이라는 효익을 가져온다. 또한 회사는 이러한 미래 효익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짐으로써 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법인세혜택은 특정 미래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결손금 등의 법인세 효과는 미래의 과세소득이 충분하여 그 혜택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될 때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 경우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을 어느 수준으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당기말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결손금 등에 따른 법인세효과의 인식여부가 결정되므로 미래 과세소득 금액 발생가능성의 수준설정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 중 실현가능성이 없어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함으로써, 모든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 중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차감 표시하는 충당금설정법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가 세무상결손금 등이 이월공제가능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됨으로써 세무상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과세소득이 공제가능기간동안 발생하도록 만드는 세무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결손금 등에 따른 미래 세차감효과의 실현가능성을 매우 높여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비용이나 손실이 예

상되는 경우 이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수익과 비용의 대응관점에서 타당하다. 다만 정책의 수행시기가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고, 중요한 비용의 측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비용 또는 손실의 인식을 함께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비용 등은 실제로 발생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개념적으로 현재가치계산이 타당한가 하는 점과 실무적으로 수행가능한가 하는 점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일시적차이 등의 소멸시기, 소멸되는 금액 및 적정할인율을 정확히 예측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이를 예측하기가 어렵거나 복잡하므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에 대한 당기 법인세 부담액과 이연법인세는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하여 자본계정을 세효과 반영 후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기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방법은 미국의 경우처럼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방법과 국제회계기준처럼 자본항목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방법은 적용상의 복잡성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보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후자의 방법을 따라서 자본항목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 4) 한국·미국·국제회계기준의 이연법인세회계 비교

여태까지의 이연법인세회계이론을 바탕으로 한국·미국·국제회계기준의 현행 이연법인세회계기준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미국·국제회계기준의 이연법인세회계 대비표1)

구 분	한 국	미 국 (SFAS No.109)	IAS No.12 (revised)
법인세효과의 측정방법	자산부채법	자산부채법	자산부채법
법인세효과의 배분방법	종합배분법	종합배분법 (APB No.23의 경우는 부분배분 법 적용하는 예외있 음)	종합배분법 (관계회사 지분 법 이익등의 경 우는 부분 배분 법을 적용하는 예외 있음)
현재가치 평가여부	적용 배제	적용 보류	적용 배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기준	소극적 방법: 실현가능성이 거 의 확실한 경우 에만 자산인식, 평가충당금계정 불필요	적극적 방법: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후 실현 가 능성이 50%이하 이면 평가 충당 금을 설정	소극적 방법 : 실현가능성이 높 은 경우에만 자 산 인식, 평가충 당금 계정 불필 요
상계여부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를 상계하여 재무제 표 공시	동일 세무당국소 관내의 동일 세 목의 경우에는 상계하고, 그이 외의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음	법인세자산·부 채를 상계할 법 적 권리를 가지 고 동시에 같은 세무당국 소관 내의 동일한 기 업에 대해서만 상계해야 함
유동성· 비유동성 분류	전부 비유동성으 로 분류	유동·비유동으 로 구분	전부 비유동성으 로 분류

## 5)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회계이익은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반면, 과세소득은 세법에 근거하여 산출된다. 즉, 회계이익은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과세소득은 세법에 따라 인식한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회계기준상의 수익과 비용은 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에 대응되는 개념이지만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상의 회계이익은 세법상의 과세소득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다음의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구성된다.

### (1)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어느 한 회계기간에 발생하면 반드시 다음 어느 회계기간에 소멸한다. 이러한 일시적 차이는 세무회계상 주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의 유보사항에 반영된다.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에 가산되는 가산할일시적차이와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감할일시적차이로 구성된다. 당기 이전에 과세소득에서 차감조정된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에 가산조정되는 가산할일시적차이에 해당되고, 당기 이전에 과세소득에 가산조정되는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조정되는 차감할일시적차이에 해당된다.

일시적 차이는 손익계산서상의 수익·비용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인 기간차이와 발생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직접적인 영향 없이 자본에 가감된 후 소멸하는 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는 차이를

---

1) 삼일회계법인, 이연법인세회계 2002, pp.86

통칭한다. 이러한 일시적 차이는 주로 기업회계 상 자산·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부채(과세기준액)의 차이로 나타난다.

## (2) 영구적 차이

영구적 차이는 특정 회계사건이 법인세법에서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업회계에서는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에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영구적 차이는 일시적 차이와는 달리 발생은 하지만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기간배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회계이익 결정시 비용에 반영되나 과세소득 결정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후 회계기간의 과세소득 결정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는 차이이므로 이는 영구적 차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예·적금의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이익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이자의 지급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소득 결정시 익금에 포함되지 않고, 이후 회계기간 중 실제로 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에 익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반영되므로 이는 일시적 차이에 해당된다.

## 6) 이연법인세의 인식

### (1) 이연법인세차의 인식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당해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한다. 매 회계연도마다 대차대조표에 이연법인세차로 계상되어 있는 차감할일시적 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

은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적절히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법인세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이 적용배제 되었으나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인식한다.

이연법인세차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키는 효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인세부담액의 감소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기업만이 배타적으로 누리는 효익이므로 자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은 당해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회계기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① 차기이후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가산할일시적차이의 규모
- ②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을 가감하기 전 예상되는 미래의 과세소득 규모
- ③ 회사의 조세정책에 따라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회사의 조세정책은 특정회계연도에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 예상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비과세대상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과세대상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규모와 시기 선택에 따라 예상과세소득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차기이후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가산할일시적차이 및 차감할일시적

- 차이 중 가산할일시적차이를 한도로 하여 계산된 차감할일시적차이
- ②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 미이행계약에서 기대되는 미래의 과세소득이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미이행계약이 매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래의 과세소득은 당기의 매출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③ 기업회계 상 공정가액으로 평가된 순자산 가액이 세무회계의 순자산 가액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이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보다 큰 경우
  - ④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경상이익이 발생한 회사로서 차기이후 예상연평균경상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예상연평균경상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경상이익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② 누적적인 경상손실로 인하여 기업회계 상 당기 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매 회계연도 말 차감할일시적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이전에 계상한 이연법인세차를 전액 감액하여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은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 환급가능한 금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해야 하며, 환급될 세액으로 아직 회수

하지 못한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미수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다만 환급 가능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결손금은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효과의 재무제표 반영 여부를 고려한다.

이월공제의 법인세효과는 이월결손금과 동일하게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한다.

## (2) 이연법인세대의 인식

가산할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는 이연법인세대로 인식한다. 이연법인세대는 재무보고 목적상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관련거래가 보고되었고 당해 일시적 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미래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현재시점에 존재하는 바, 이러한 법인세부담액의 증가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특정 기업만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므로 부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 1) 이연법인세회계 정보유용성에 관한 연구

#### (1) 이종천·오웅락<sup>2)</sup>

이종천·오웅락(2002)의 연구는 이연법인세회계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으로 제공되는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여 이연법인세회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통계적 모형으로 추가정보검증모

2) 이종천·오웅락, “이연법인세회계의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적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4호 2002년 12월, pp. 31-55.

형<sup>3)</sup>과 Ohlson모형<sup>4)</sup>을 사용하였다.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주당순이익과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주당순이익의 주가에 대한 회귀분석을 행하여,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주당순이익이 과거의 주당순이익이 설명할 수 없는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서 이연법인세차와 주가와와의 상관관계는 1%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연법인세대는 이연법인세차와는 달리 주가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 순이익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연법인세차가 자산으로 인식되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연법인세대가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의 주가 설명력을 저하시키는 잡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의 주가에 대한 설명력이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순이익의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더불어 이연법인세차·대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모형의 이연법인세차의 계수가 유의적인 양의 부호를 보여, 이연법인세차가 미래에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켜 현금흐름을 양호하게 하는 자산으로써 인식되어 공시 후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연법인세대의 부채성에 대한 회의로 인하여 투자자가 이연법인세대를 부채로 크게 인식하지 않아 이연법인세차보다 이연법인세대와 주가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 타당성의 실증적인 검증과

3) 추가정보검증모형은 주가는 기대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이익의 함수로 표시하는 Collins, Pincus와 Xie(1999)의 단순이익자본화모형과 동일하다.

4) Ohlson모형은 배당할인모형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유도된 모형으로 기업가치는 회계정보인 초과 이익과 장부가치에 의해 측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성에 대한 논란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나, 향후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된 시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 (2) 이준규·김문철·김갑순<sup>5)</sup>

이준규(2001)등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연법인세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구모형으로 Ohlson(1995)의 초과이익평가모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이연법인세의 가치관련성은 이연법인세를 발생시킨 일시적 차이가 역전되어 이연법인세가 실현되는 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이연법인세를 예상 실현시기에 따라 단기, 중기 및 장기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회귀계수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당 이연법인세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당 이연법인세 ₩1의 한계가치는 ₩1.23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자들이 기업가치 평가시에 이연법인세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연법인세 요소별 모형 분석에서는 단기와 중기요소별 합계의 평균값은 음(-)으로서 이연법인세대의 발생과 밀접하고, 장기요소 합계의 평균값은 양(+)으로서 이연법인세차의 발생과 밀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기에 실현가능한 구성요소일수록 기업가치평가에 있어서 더 큰 주가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중기와 장기실현가능 구성요소의 기업가치평가에 있어서의 주가관련성은 차별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이준규·김문철·김갑순, “이연법인세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6권 제2호 2001년 6월, pp.145-164.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0-042-C00130).

위의 결과에 의해서 이연법인세도 대차대조표상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마찬가지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연법인세의 예상실현시기별로 주가 관련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 결과는 중장기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연법인세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상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 (3) 신호영 · 조찬우<sup>6)</sup>

이 연구의 목적은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익정보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이연법인세 관련 자산, 부채가 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 역시 앞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Ohlson(1995)의 초과이익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이연법인세의 회계정보의 자산성과 부채성을 검증하고, 이연법인세차(대)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기업가치 평가 시에 이연법인세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표본기업을 3월주가와 12월주가로 나누어 각 변수들과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이연법인세순액이 3월 시점과 12월 시점에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기업가치에 정(+)<sup>7)</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가치 평가 시에 이연법인세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연법인세순액을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이연법인세차의 경우 기업가치에 정(+)<sup>7)</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연법인세대의 경우 기업가치에 부(-)<sup>8)</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신호영·조찬우, “이연법인세회계정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19권 2003년 6월, pp. 131-143.

7) 이연법인세대의 총액분은 5%, 변동분은 1%의 유의수준에서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관되게 현행기업회계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연법인세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기간의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에 대한 소멸시점의 영향에 따른 정보효과에 대한 연구 과제를 남겼다.

## 2) 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 (1) 전규안 · 박종일<sup>9)</sup>

앞의 연구들이 이연법인세 회계정보의 정보효과 즉, 주가를 통해 본 이연법인세의 가치관련성에 따른 유용성에 관한 연구로서 “이연법인세 정보가 투자자에게 어떻게 유용한 정보인가”라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위에 대한 해답의 하나를 얻고자 이연법인세 정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그 결과 재량적 발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이연법인세대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현금흐름과 영업현금흐름의 변동과 이연법인세대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연법인세대의 변동이 증가한 기업이 이연법인세 차의 변동이 증가한 기업보다 재량적 발생 및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유의하게 양(+)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이용자들이 이연법인세 공시정보를 이용하면 기업의 이익조정여부에 따른 재량적 발생 등의 추정 없이 공시된 정보에서 기업의 이익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이 이연법인세 공시정보를 이용하면 기업의 이익

8) 이연법인세대의 총액분은 12월시점에서 5%의 유의수준에서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연법인세대의 변동분은 10% 유의수준에서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연법인세대의 변동분의 경우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전규안·박종일, “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1호 2002년 3월, pp. 107-135.

조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익조정과 이연법인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이익조정의 대응치들 간의 검증력 차이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 (2) 이화진<sup>10)</sup>

이 연구의 목적은 1) 경영자의 이연법인세회계 처리가 기업특성변수의 영향을 받는지, 2) 이연법인세차의 크기가 경영자의 회계선택 동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를 이연법인세회계 도입 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이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대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에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및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에 대해서는 미래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영자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이익조정의 도구로 사용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한 기업들 중에서 영업현금흐름이 크거나 기업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인세를 최소화하거나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이익을 감소시키는 재량적 발생계정을 활용하였고 이것이 세무조정을 거치면서 보고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나타나 이연법인세차가 늘어나게 되었다. 부채비율이 높거나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이익을 증가시키는 재량적 발생계정의 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제약사항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에 대한

---

10) 이화진, “이익조정과 이연법인세차의 선택”, 「회계와 감사연구」 제39호 2003년 12월.

재량권을 기회주의적으로 행사하여 당기손익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즉, 이연법인세의 비재량적, 재량적 요소를 통제 한 후에도 유의할 뿐만 아니라 여러 동기변수를 함께 고려한 경우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다양한 동기나 유인에 따라 이연법인세처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이연법인세 인식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 (1) 이만우·신현걸<sup>11)</sup>

이 연구는 이연법인세회계를 도입하여 최초로 재무제표를 공표한 1999년 3월 31일이 결산일인 기업들이 이연법인세를 통해서 당기손익을 조작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이연법인세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공시를 충분히 이행했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를 재무제표에 반영함으로써 재무비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한 논문이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연법인세를 통한 이익조작의 가능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많은 기업들이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주석공시 사항을 충분하게 이행하고 있지는 않았다. 특히, 이연법인세처를 인식하면서 미래의 법인세효과에 대한 실현가능성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적정하게 이연법인세를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이연법인세회계를 최초로 적용한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 기업 및 감사인이 이연법인세회계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어야 할 지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으나, 표본기업 수가 적고, 이연법인세 회계의 최초 적용 재무제표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다는 아쉬움을 나눴다.

11) 이만우·신현걸, “이연법인세회계 최초도입년도의 회계처리에 대한 평가”, 「회계저널」 제9권 제1호 2000년 3월, pp. 51-65.

## (2) 실험결과<sup>12)</sup>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는 것이 미래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으며, 자산재평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대도 미래의 소멸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의 실현가능성 또는 소멸가능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결국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영자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 기업의 이익도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동안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이연법인세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연법인세 인식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연법인세에 대한 주식공시를 충분하게 이행한 기업과 이행하지 않은 기업간에 기업특성 및 감사인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이연법인세 인식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할 수 있는 기업이 이연법인세차를 보고한 경우에 비하여 이연법인세대를 인식할 수 있는 기업이 이연법인세대를 보고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실현 가능성 정도를 최대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투자주식 평가손실의 이연법인세차 인식, 재평가 토지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이연법인세대 인식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었다. 또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 및 소멸가능성 판단수준에 따라 이익조정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연법인세 주식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주식공시를 충분하게 이행한 기업의 부채비율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

---

12) 신현걸, “이연법인세 인식 및 공시 현황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39호 2003년 12월

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연법인세 회계기준이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적절한 이연법인세 공시에 대한 감사인의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 IV. 연구가설의 설정과 연구설계

### 1. 가설설정

이연법인세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제공되는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하여 다음의 가설들로 검증해 보기로 한다.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하게 이용 되어진다면, 이연법인세회계제도 도입에 의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이연법인세가 반영된 회계정보가 이연법인세가 반영되지 않은 회계정보보다 이용자들에게 유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연법인세가 반영된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들의 투자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어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가설 1 :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이익정보가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이익정보보다 가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초과이익 및 장부가치는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초과이익 및 장부가치보다 가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연법인세는 1998년 4월 1일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이연법인세차·대를 각각 자산,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자본시장에서 이연법인세 계정을 과연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의미의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연법인세채를 자산으로 이연법인세대를 부채로 인식을 한다면 가치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이연법인세채를 자산으로 인식한다면 정보이용자들에게 호재로 판단이 되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 반대로 이연법인세대는 부채로 인식되어 정보이용자들에게 악재로 판단되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 이연법인세채는 주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이연법인세대는 주가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연법인세회계가 도입되므로 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인식·기록하는 기업들인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와 다르게 이익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다면 이연법인세가 발생하는 기업들은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것과 다르게 회계이익이 표현되어 지게 되므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의 시점에서 이연법인세채·대가 많이 기록되어진 기업인 경우는 회계이익의 큰 변동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여 좀 더 실질적인 이득으로 인식되어지는 현금흐름을 투자결정의 요인으로 볼 것이다. 그 반대로 이연법인세채·대가 적게 기록되어진 기업인 경우 회계이익의 변화가 일어나는 값이 극히 작을 것이므로 회계이익을 의사결정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추측되어진다. 그러므로 다음의 가설 4를 설정하게 되었다.

가설 4 :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은 회계이익보다 현금흐름에 대하여, 이연법인세가 작은 기업은 현금흐름보다 회계이익

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 관련성을 갖는다.

## 2. 연구설계

### 1) 이연법인세의 정보효과에 대한 검증모형 및 변수정의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으로 제공되는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여 이연법인세회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통계적 모형으로 추가정보검증모형과 Ohlson모형을 사용하였다. 추가정보검증모형은 이연법인세회계도입으로 제공되는 추가정보인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이연법인세차·대의 정보 유용성을 주가에 대한 설명력에 의해 확인하는 모형이며, Ohlson모형은 이연법인세회계가 반영 또는 미반영된 초과이익과 장부가치 중 어느 회계수치가 기업가치인 주가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가를 확인하는 모형이다.

다음의 모형은 주가를 이연법인세 반영 이익정보와 이연법인세 미반영 이익정보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하여 상이한 회계정보에 따른 주가에 대한 설명력의 차이를 검증하여 이연법인세 관련 추가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text{모형 1 : } P = \beta_0 + \beta_1 \text{DEPS} + \varepsilon$$

$$\text{모형 2 : } P = \beta_0 + \beta_1 \text{NEPS} + \varepsilon$$

P : 주가(해당연도 12월 31일 종가)

DEPS :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 순이익

## NEPS :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 순이익

위의 검증모형 1은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주당순이익과 주가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이며, 검증모형 2는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주당순이익과 주가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검증모형 1의 설명력이 검증모형 2의 설명력보다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 관련 이익정보가 추가적인 정보내용을 갖고 있으며, 이는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 모형에서 사용 되어질 변수인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제시되어진 주당 당기순이익을 사용한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이연법인세가 반영되어진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값이 당기순이익으로 기재되어지므로, 여기에 주가와 비교하기 위하여 주당순이익을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의 값으로 한다.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순이익은 이연법인세가 이미 반영되어진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에 발생되어진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를 각각 차감 및 가산하여 이연법인세가 미반영된 순이익을 구하고 그 값을 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순이익을 구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

$$= (\text{당기순이익} - \text{우선주배당금}) / \text{유통보통주식수}^{13)}$$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순이익

---

13) 여기에서의 유통보통주식수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사용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당기순이익 / 주당 당기순이익

위의 식에서 당기순이익과 주당당기순이익은 모두 이연법인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변수측정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유통보통주식수는 모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사용한다.

$$= (\text{당기순이익} - \text{이연법인세차 변동액} \\ + \text{이연법인세대 변동액} - \text{우선주 배당금}) / \text{유통보통주식수}$$

## 2) Ohlson모형을 이용한 이연법인세 정보효과 검증모형 및 변수정의

Ohlson모형은 배당할인모형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유도된 모형으로 기업 가치는 회계정보인 초과이익과 장부가치에 의해 측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Ohlson모형의 초과이익과 장부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진실한 회계정보를 의미한다.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으로 인하여 초과이익과 장부가치 또한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초과이익 및 장부가치,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초과이익 및 장부가치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Ohlson모형에 따라 주가와 이연법인세 반영 또는 미반영한 초과이익과 장부가치의 관계를 각각 회귀분석하여 두 회귀분석의 설명력의 차이로 위의 가설 2를 살펴보고자 한다.

$$\text{모형 3 : } P = \beta_0 + \beta_1DX + \beta_2DBV + \varepsilon$$

$$\text{모형 4 : } P = \beta_0 + \beta_1NX + \beta_2NBV + \varepsilon$$

DX :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초과이익

NX :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초과이익

DBV :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장부가치

NBV :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장부가치

위 모형 3과 모형 4는 Ohlson모형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 반영 또는 미반영 주당초과이익 및 주당장부가치를 구하고 있다.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모형 3의 설명력이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모형 4의 설명력보다 유의

하게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 반영 회계정보가 이연법인세 미반영 회계정보보다 기업가치를 보다 진실하게 나타내는 회계정보임을 의미하여 가설 2를 지지하게 된다. 위의 모형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되어진 이연법인세 반영 초과이익은 법인세비용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에서 무위험이자율×장부가치를 차감하고 이를 보통주식수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반대로 이연법인세 미반영 초과이익은 법인세부담액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에서 무위험이자율×장부가치를 차감하고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초과이익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주식수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또한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장부가치는 순자산 장부가치, 즉 자본총계를 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구하고,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장부가치는 순자산 장부가치에서 이연법인세 차·대를 각각 가감한 것을 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구한 값을 사용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이연법인세 반영 초과이익} = & \{(\text{당기순이익} - \text{우선주배당금}) \\ & - (\text{무위험이자율}^{14}) \times \text{전기 장부가치}\} / \text{유통보통주식수}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이연법인세 미반영 초과이익} = & \{(\text{당기순이익} - \text{이연법인세차} + \text{이연법인세대} - \text{우선주배당금}) \\ & - (\text{무위험이자율} \times \text{전기 장부가치})\} / \text{유통보통주식수} \end{aligned}$$

$$\text{이연법인세 반영 장부가치} = \text{순자산장부가치} / \text{유통보통주식수}$$

14) 무위험이자율은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금융통계월보(2004년 6월 기준)에서 제시되어진 국채수익률을 사용하며, 1999년 7.69%, 2000년 8.3%, 2001년 5.68%, 2002년 5.28%, 2003년 4.87%이다.

이연법인세 미반영 장부가치 =

(순자산 장부가치 - 이연법인세차 + 이연법인세대) / 유통보통주식수

### 3)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성 검증모형 및 변수정의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에 의해 인식하도록 되어져 있는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세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연법인세차·대의 정보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연법인세차·대가 발생한 기업을 구분하여 이연법인세차·대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이연법인세차·대가 미래 현금흐름의 증감을 가져오는 자산과 부채로서의 정보내용이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는 위의 가설 3에 대한 모형으로 다음의 두 모형을 설정하였다.

$$\text{모형 5 : } P = \beta_0 + \beta_1 \text{DEPS} + \beta_2 \text{DTA} + \varepsilon$$

$$\text{모형 6 : } P = \beta_0 + \beta_1 \text{DEPS} + \beta_2 \text{DTL} + \varepsilon$$

DEPS :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 순이익

DTA(Deferred Tax Asset) : 주당이연법인세차

DTL(Deferred Tax Liability) : 주당이연법인세대

위의 모형에서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같이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성을 검증할 것이다. 만약에 주당이연법인세차의 회귀계수가 양(+ )인 경우 이연법인세차가 자산으로 인식됨을 의미하고, 주당이연법인세대의 회귀계수가 음(-)인 경우 이연법인세대는 부채로 인식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가 된다. 위의 변수로 사용되어지는 주당이연법인세차·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

$$\text{주당이연법인세차} = \text{이연법인세차} / \text{유통보통주식수}$$

$$\text{주당이연법인세대} = \text{이연법인세대} / \text{유통보통주식수}$$

#### 4) 이연법인세 발생분류에 따른 이연법인세 정보효과 검증모형 및 변수정의

이연법인세를 인식함으로써 회계이익의 변동으로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연법인세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은 이연법인세를 적게 발생시키는 기업보다 이연법인세 발생으로 인한 회계이익의 변동이 크게 일어나 회계이익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여 정보이용자들은 현금흐름을 주된 의사결정수단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이연법인세를 적게 발생시키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회계이익을 주된 의사결정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text{모형 7 : } P = \beta_0 + \beta_1 \text{DEPS} + \varepsilon$$

$$\text{모형 8 : } P = \beta_0 + \beta_1 \text{CF} + \varepsilon$$

DEPS :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 순이익

CF : 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현금흐름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위의 모형을 통해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과 이연법인세가 작은 기업에 대하여 각각 회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려한다.

$$|DT| = |DEPS| - |NEPS|$$

|DT| : 이연법인세의 절대치

|DEPS| :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 순이익 절대치

|NEPS| :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 순이익 절대치

위와 같이 이연법인세를 구하고 그 중위수를 기준으로 중위수보다 크면 이연법인세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 중위수보다 작으면 이연법인세를 적게 발생시키는 기업으로 구분하여 모형 7과 모형 8을 통해 회귀분석 하려 한다. 이연법인세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을 모형 7과 모형 8을 이용해서 회귀분석한 결과 모형 7의 설명력이 모형 8의 설명력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을 때 이연법인세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의 경우 주당순이익보다 현금흐름에 대하여 가치 관련성을 갖고, 이연법인세를 적게 발생시키는 기업을 모형 7과 모형8을 이용해서 회귀분석한 결과 모형 8의 설명력이 모형 7의 설명력보다 유의하게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를 적게 발생시키는 기업의 경우 현금흐름보다 주당순이익에 대하여 가치관련성을 갖는다는 가설4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표본 선정

본 논문에서 표본으로 연구기간을 1999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표본기업들의 동질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구성항목도 상이하고, 다른 산업들에 비해 규제가 심하며 영업환경도 다른 금융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1)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기업
- (2) 연구기간 동안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있는 기업
- (3) 한국신용평가(주)의 KIS-FAS 데이터 베이스에서 회계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기업



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되어진 표본대상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신용평가(주)의 KIS-FAS 데이터 베이스에서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기업들로서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총 수는 612개로 5년간의 자료의 총 수는 3060개의 관측치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1999년과 2003년 5년 동안에 한번도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은 기업 및 주가 등의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기업들을 제외하면 1999년 403개, 2000년 403개, 2001년 363개, 2002년 399개, 2003년 416개로 총 1984개의 관측치로 나타났으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4>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차를 발생시키는 기업과 이연법인세대를 발생시키는 기업을 분류를 한 결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표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이연법인세차를 발생시키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기업의 수가 이연법인세차를 발생시키는 기업은 2001년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2003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연법인세대를 발생시키는 기업은 한 해씩 차이를 두면서 증가와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표 4> 표본기업 연도별 현황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이연법인세차 발생기업 (구성비율)	217 (53.8%)	215 (53.3%)	210 (57.8%)	233 (58.4%)	261 (62.7%)	1,136 (57.3%)
이연법인세대 발생기업 (구성비율)	186 (46.2%)	188 (46.7%)	153 (42.2%)	166 (41.6%)	155 (37.3%)	848 (42.7%)
표본 총기업수	403 (100%)	403 (100%)	363 (100%)	399 (100%)	416 (100%)	1984 (100%)

이를 다시 업종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5>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337개로 17%의 화학이고,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가 223개의 기업으로 11.2%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유통업 7.8%, 철강및금속 6.8% 건설업 6.7%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13개로 0.7%의 의료정밀, 0.8%의 기타제조업, 0.9%의 통신업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업종별 기업현황

업종명	기업수	비율(%)	업종명	기업수	비율(%)
기타	3	0.2	음식료품	128	6.5
건설업	132	6.7	의료정밀	13	0.7
기계	116	5.8	의약품	106	5.3
기타 제조업	15	0.8	전기,전자	223	11.2
비금속광물	81	4.1	전기가스업	47	2.4
서비스업	60	3.0	제조업	29	1.5
섬유,의복	105	5.3	종이,목재	82	4.1
운수장비	130	6.6	철강및금속	134	6.8
운수창고	71	3.6	통신업	17	0.9
유통업	155	7.8	화학	337	17.0
			합계	1984	100.0

## V. 실증분석결과

### 1. 기술통계

전체표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주가, 이연법인세반영 주당순이익 및 미반영 주당순이익, 이연법인세차·대 등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6>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6> 변수들의 기술통계

(단위 : 천원)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P	1984	16.89897	43.00255	0.117	594.000
DEPS	1984	2.59952	9.76529	-180.77100	151.01200
NEPS	1984	2.48989	10.45844	-175.52926	183.67981
DX	1984	0.05229	9.95573	-302.53545	94.52166
NX	1984	-0.04788	10.71083	-297.29371	141.95241
DBV	1984	33.08706	77.64547	-49.95378	1587.54175
NBV	1984	32.98689	77.60226	-47.15111	1592.78350
DTA	1136	1.03989	1.86049	0.00004	26.96237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DTL	848	1.15869	4.16802	0.00002	99.12369
CF	1984	5.56088	15.00375	-39.35245	284.44047
DT	1984	-0.29378	3.18211	-99.12369	44.21376

주) 주가 : 해당연도 말 주가

DEPS :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 순이익

NEPS :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 순이익

DX :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 초과이익

NX :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 초과이익

DBV :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 장부가치

NBV :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 장부가치

DTA : 주당 이연법인세차

(이연법인세차는 법인세부담액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

DTL : 주당 이연법인세대

(이연법인세대는 법인세비용에서 법인세부담액을 차감)

CF : 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

<표 6>에서 전체 표본 1984개 기업의 평균 주가는 약 16,898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 순이익의 평균치는 각각 약 2,599원과 2,489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의 경우 표준편차가 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당초과이익과 주당장부가치의 경우에도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것이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것보다 표준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연법인세회계 도입 이전에 기업 이익의 추세에 혼란을 야기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로 발생한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인세회계 도입으로 인하여 제거되어 보다 안정된 기업 이익의 추세가 형성되어 이익의 표준편차가 작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연법인세회계 도

입에 의해 이익의 추세에 혼란을 야기하여 이익의 표준편차를 크게 한 일시적 차이가 제거되어 이익의 표준편차가 작아지는 것이다.

## 2. 상관관계분석

### 1) 이연법인세 반영·미반영 변수들의 상관관계

<표 7>는 주가와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순이익 및 Ohlson 모형에 의해 계산되어진 이연법인세 반영 초과이익과 이연법인세 미반영 초과이익, 이연법인세 반영 장부가치, 이연법인세 미반영 장부가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표이다.

<표 7> 이연법인세 반영·미반영 변수들의 상관관계수

	P	DEPS	NEPS	DX	NX	DBV	NBV
P	1.000	.593**	.543**	.287**	.259**	.488**	.488**
DEPS		1.000	.951**	.817**	.777**	.271**	.274**
NEPS			1.000	.786**	.842**	.242**	.257**
DX				1.000	.953**	-.333**	-.330**
NX					1.000	-.320**	-.304**
DBV						1.000	.999**
NBV							1.000

\*\* 상관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가와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 순이익의 상관관계수가 각각 0.593과 0.543으로 이들의 상관관계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는 이 변수 주가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이 주가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순이익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연법인세 반영 초과이익과 이연법인세 미반영 초과이익 역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반영 장부가치 및 이연법인세 미반영 장부가치 또한 주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상관관계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2) 이연법인세차·대 발생기업의 변수간 상관관계

이연법인세차 발생기업의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뿐만 아니라 주당 이연법인세차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 <표 8>이고, 이연법인세대 발생기업의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 주당이연법인세대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 <표 9>이다. 이를 통해 가설 3과 관련지어 이연법인세차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이연법인세대의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표 8> 이연법인세차 발생기업의 변수간 상관계수

	P	DEPS	DTA
P	1.000	.764**	.281**
DEPS		1.000	.192**
DTA			1.0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연법인세차를 발생시키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주당이연법인세차 또한 주가에 대하여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이연법인세차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9> 이연법인세대 발생기업의 변수 간 상관계수

	P	DEPS	DTL
P	1.000	.375**	.182**
DEPS		1.000	.170**
DTL			1.0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9>에서는 이연법인세대를 발생시키는 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차를

발생시키는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당이연법인세차와 마찬가지로 주당이연법인세대 또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연법인세대를 부채로 인식을 한다면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야 하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부채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회귀분석을 통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당이연법인세차가 주당이연법인세대에 비하여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므로 이연법인세차가 주가에 대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갖음을 알 수 있다.

### 3) 이연법인세 발생분류에 따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이연법인세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과 적게 발생시키는 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주당현금흐름 중 어느 것이 주가와 가치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가설 4의 검증을 위하여 우선 이연법인세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과 적게 발생시키는 기업을 각각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과 이연법인세가 작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주가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표 10>에서는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의 주가와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주당현금흐름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여기서는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주당현금흐름은 주가에 대하여 각각 0.598과 0.707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당현금흐름이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보다 큰 수치를 보이므로 주가에 대하여 회계이익보다 현금흐름이 좀 더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설 4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확실한 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10>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의 변수 간 상관계수

	P	DEPS	CF
P	1.000	.598**	.707**
DEPS		1.000	.540**
CF			1.0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아래 <표 11>은 이연법인세가 작은 기업의 주가와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주당현금흐름의 상관관계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도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 및 주당현금흐름은 주가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이연법인세가 작은 기업의 변수간 상관계수

	P	DEPS	CF
P	1.000	.582**	.628**
DEPS		1.000	.734**
CF			1.0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그러나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에 비하여 작은 상관계수를 보이므로 현금흐름에 대한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주당 현금흐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계수가 0.734로써 1%의 유의수준에서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이연법인세정보와 주가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에 의해 제공되는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의 정보가 유용한 정보인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 순이익을 독립변수로, 주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Ohlson모형에 의한 이연법인세 반영·미반영 초과이익과 장부가치 중 기업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회계정보를 확인하고자 다음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이연법인세 반영·미반영 주당순이익의 주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주당순이익과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주당순이익의 주가에 대한 회귀분석을 행하여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주당순이익이 과거의 주당순이익이 설명할 수 없는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12>의 회귀분석결과를 분석하면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모형1과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모형2의 주당순이익 계수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었으며 F값 또한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므로 이 모형의 설명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순이익 모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순이익의 회귀계수와 수정 R<sup>2</sup>가 선행연구에서 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 이연법인세를 반영·미반영한 주당순이익의 주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모형 1 :  $P = \beta_0 + \beta_1 \text{DEPS} + \varepsilon$

모형 2 :  $P = \beta_0 + \beta_1 \text{NEPS} + \varepsilon$

	$\beta_0$	$\beta_1$	수정 R <sup>2</sup>	F값
모형1	10.116**	2.609**	0.351	1,072.612**
모형2	11.337**	2.234**	0.295	829.850**

- 주) 1. \*\* : 1%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2. P(주가) : 해당연도 12월 31일 종가  
 DEPS :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  
 NEPS :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순이익  
 3. 비표준화 회귀계수임<sup>15)</sup>

이는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회계이익이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회계이익보다 더 유용한 이익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 회계의 도입 타당성과 관련지어 본다면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이익정보가 그렇지 않은 이익정보보다 주가를 좀 더 잘 설명해 주므로 정보유용성 측

15) 표준화 회귀계수 : 모형 1 -  $\beta_1$  (0.593), 모형 2 -  $\beta_1$  (0.543)

면에서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에 대한 찬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 2) Ohlson 모형의 초과이익과 장부가치와 주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Ohlson 모형에 의해 이연법인세회계 도입에 의해 기업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상이한 회계정보인 이연법인세 반영·미반영 초과이익과 장부가치 중 기업의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표 13> Ohlson 모형을 이용한 주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text{모형 3 : } P = \beta_0 + \beta_1DX + \beta_2DBV + \varepsilon$$

$$\text{모형 4 : } P = \beta_0 + \beta_1NX + \beta_2NBV + \varepsilon$$

	$\beta_0$	$\beta_1$	$\beta_2$	수정 $R^2$	F값
모형3	4.748**	2.185**	0.364**	0.465	864.446**
모형4	5.576**	1.802**	0.346**	0.420	718.839**

- 주) 1. \*\* : 1%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2. P(주가) : 해당연도 12월 31일 종가  
 DX :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초과이익  
 NX :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초과이익  
 DBV :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장부가치  
 NBV : 이연법인세 미반영 주당장부가치  
 3. 비표준화 회귀계수임.<sup>16)</sup>

위 <표 13>에서는 Ohlson 모형에 의한 주가와 이연법인세 반영 초과

16) 표준화 회귀계수 : 모형 3 -  $\beta_1$  (0.506)  $\beta_2$  (0.657) 모형 4 -  $\beta_1$  (0.449)  $\beta_2$  (0.624)

이익 및 장부가치 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모형 3과 모형 4의 수정  $R^2$ 는 각각 0.465, 0.420이며, F값 또한 각각 864.446, 718.839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는 이연법인세제도 도입은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진실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모형 3과 모형 4의 초과이익의 회귀계수와 장부가치의 회귀계수 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초과이익과 장부가치가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초과이익과 장부가치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큰 수치를 가지므로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초과이익과 장부가치는 기업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회계정보임을 의미한다.

### 3)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주당순이익의 주가에 대한 설명력을 보여주는 모형1에 추가적으로 이연법인세차·대를 독립변수로 추가함으로써 이연법인세차·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 14>에서 보듯이 모형 5와 모형 6에서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의 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은 주가와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12>의 회귀분석결과인 모형 1과 모형 2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연법인세차가 발생하는 기업과 이연법인세대가 발생하는 기업을 각각 표본으로 하여 모형 1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전체기업을 표본으로 했을 때

보다 이연법인세차를 발생시키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에 대한 회귀계수가 훨씬 큰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연법인세대를 발생시키는 기업의 경우는 훨씬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연법인세차를 발생시키는 기업과 이연법인세대를 발생시키는 기업들 간에 서로 상계되어 전체기업을 표본으로 했을 때 중간치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4> 이연법인세차·대를 추가한 주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모형 1 :  $P = \beta_0 + \beta_1 \text{DEPS} + \varepsilon$

모형 5 :  $P = \beta_0 + \beta_1 \text{DEPS} + \beta_2 \text{DTA} + \varepsilon$

모형 6 :  $P = \beta_0 + \beta_1 \text{DEPS} + \beta_2 \text{DTL} + \varepsilon$

		$\beta_0$	$\beta_1$	$\beta_2$	수정 $R^2$	F값
이연법인세차 발생기업	모형1(차)	7.319**	4.189**		0.584	1,591.107**
	모형5	3.847**	4.043**	3.658**	0.602	858.652**
이연법인세대 발생기업	모형1(대)	13.455**	1.165**	-	0.140	138.446**
	모형6	12.515**	1.100**	0.980**	0.153	77.560**

주) 1. \*\* : 1%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2. P(주가) : 해당연도 12월 31일 종가

DEPS :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 순이익

DTA(Deferred Tax Asset) : 주당이연법인세차

DTL(Deferred Tax Liability) : 주당이연법인세대

3. 비표준화 회귀계수임.<sup>17)</sup>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인 <표 14>에

17) 표준화 회귀계수 : 모형 1(차) -  $\beta_1$  (0.764), 모형 5 -  $\beta_1$  (0.737)  $\beta_2$  (0.139)  
모형 1(대) -  $\beta_1$  (0.375), 모형 6 -  $\beta_1$  (0.354)  $\beta_2$  (0.122)

의하면, 이연법인세차를 발생시키는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을 관계로 한 모형 1과 이연법인세차를 추가한 모형 5의 이연법인세차의 계수는 유의적인 양의 부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연법인세차가 미래에 현금흐름을 양호하게 하는 자산으로 인식되어 공시 후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연법인세대 발생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을 관계를 회귀분석한 모형 1에 이연법인세대를 독립변수로 추가한 모형 6의 이연법인세대의 계수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나 이연법인세대는 미래에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채로 인식되지 못하여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연법인세대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상관관계의 분석결과와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으로 시장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가에 이미 이연법인세대에 대한 정보효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연법인세대의 반응계수가 역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4) 이연법인세 발생분류에 따른 이연법인세 정보효과 회귀분석결과

이연법인세를 인식함으로써 회계이익의 변동으로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연법인세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은 이연법인세를 적게 발생시키는 기업보다 이연법인세 발생으로 인한 회계이익의 변동이 크게 일어나 회계이익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여 정보이용자들은 현금흐름을 주된 의사결정수단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이연법인세를 적게 발생시키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회계이익을 주된 의사결정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으로 분류하여 회계정보에 관한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표 15>를 살펴보면 이렇다. 이연법인세

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 모두 모형 7과 모형 8에 대한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 계수와 주당현금흐름의 회귀계수와 F값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모형의 설명력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표 15>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간의 회귀분석결과

모형 7 :  $P = \beta_0 + \beta_1 \text{DEPS} + \varepsilon$

모형 8 :  $P = \beta_0 + \beta_1 \text{CF} + \varepsilon$

		$\beta_0$	$\beta_1$	수정 $R^2$	F값
이연법인세가 큰기업	모형7	10.530**	2.746**	0.356	549.819**
	모형8	4.108**	2.176**	0.500	990.849**
이연법인세가 작은기업	모형7	10.028**	2.274**	0.338	509.132**
	모형8	8.395**	1.513**	0.394	644.263**

- 주) 1. \*\* : 1%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2. P(주가) : 해당연도 12월 31일 종가  
 DEPS :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 순이익  
 CF : 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  
 3. 비표준화 회귀계수임.<sup>18)</sup>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의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의 회귀계수와 주당현금흐름의 회귀계수가 유의적이기는 하나, 두 회귀계수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이 현금흐름보다 큰 수치

18) 표준화 회귀계수 : 이연법인세 큰 기업 -> 모형 7 -  $\beta_1$  (0.597), 모형 8 -  $\beta_1$  (0.707)  
 이연법인세 작은 기업 -> 모형 7 -  $\beta_1$  (0.582), 모형 8 -  $\beta_1$  (0.628)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연법인세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의 경우 회계이익의 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시 회계이익보다 현금흐름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이라는 가설 4의 일부분의 내용을 기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연법인세가 작은 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과 주당현금흐름의 회귀계수가 유의적이며,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연법인세 반영 주당순이익의 회귀계수가 주당현금흐름의 회귀계수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연법인세가 작은 기업의 경우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시에 현금흐름 정보보다 회계이익정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이라는 가설 4의 일부분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가 꼭 이연법인세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가치관련성이 현금흐름보다 회계이익 쪽이 더 크다고 보다는 이연법인세를 발생시키는 기업 전체가 현금흐름보다는 회계이익에 대하여 가치관련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연법인세가 반영된 회계정보와 이연법인세차·대의 정보내용이 회계정보로써 유용한 정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이익정보와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이익정보 중 어느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검증하고, 또한 Ohlson모형에 의해 계산되어진 초과이익과 장부가치를 이연법인세 반영 또는 미반영으로 나누어 과연 어느 정보가 기업가치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둘째, 이연법인세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제시하는 것과 같이 이연법인세차·대가 각각 자산과 부채로써 정보 이용자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며, 셋째,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시 이익정보와 현금흐름정보 중 어느 것을 중요한 정보로 이용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기간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의 기간 중 12월 31일 현재 상장된 기업 중에서 이연법인세를 보고한 금융업을 제외하고, 추가자료 및 변수추정에 필요한 계정이 없는 계정과목을 모두 삭제한 1984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연법인세를 반영 또는 미반영한 이익정보 및 초과이익, 장부가치의 회귀계수는 모두 주가에 대하여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변수들의 회귀계수와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회귀계수의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변수들이 그렇지 않은 변수들에 비해 큰 값을 보여 이연법인세를 반영한 회계정보들이 이연법인세를 미반영한 회

계정보들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성을 검증하는 분석에서는 이연법인세차가 주가에 대하여 상관관계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귀분석에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가져 이연법인세차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연법인세대의 경우는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양(+)의 값을 가져 이연법인세대는 부채로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연법인세 발생액 절대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큰 기업과 작은 기업으로 분류하여 주가 가치관련성에 대하여 알아보려 했던 회귀분석에서는 이연법인세가 큰 기업의 경우 회계이익보다 현금흐름에 더 큰 가치관련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회계이익에 대하여 가치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연법인세가 작은 기업의 경우는 가설 4에서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금흐름보다 회계이익에 대하여 더 큰 가치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첫째, 이연법인세 반영 회계정보와 이연법인세 미반영 회계정보의 회귀계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분석을 통하여 설명하지 못하였고, 둘째, 자료를 정렬·분류 및 삭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 셋째,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코스닥 등록기업 및 기타기업을 포함하고, 수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연법인세회계 정보효과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 문헌

금융감독위원회,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1999.

김영수·박만성, “법인세비용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제23권 제2호, 2000, pp.245~263.

삼일회계법인, 이연법인세회계, 2002.

송인만·윤순석, “중급재무회계”, 제21장 이연법인세회계, 신영사, 2003.

신영식, “법인세 기간배분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집 제3호, 1998, pp. 157~175.

신현걸, “이연법인세 인식 및 공시 현황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39호, 2003년 12월.

신호영·조찬우, “이연법인세회계정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19권, 2003년 6월, pp. 131~143.

심윤도, “이연법인세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제9권, 1999, pp. 155~168.

이만우·신현걸, “이연법인세회계 최초도입년도의 회계처리에 대한 평가”, 「회계저널」, 제9권 제1호, 2000년 3월, pp. 51~65.

이종천·오웅락, “이연법인세회계의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4호, 2002년 12월, pp.31~55.

이준규·김문철·김갑순, “이연법인세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6권 제2호, 2001년 6월, pp.145~164

이화진, “이익조정과 이연법인세차의 선택”, 「회계와 감사연구」, 제39호, 2003년 12월.

이효섭·박희석,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공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7집 제3호, 2000년, pp. 249~273.

전규안·박종일, “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1호, 2002년 3월, pp. 107~135.

조만식, “이연법인세제도(상)”, 월간회계, 1996, pp.100~161.

한국회계연구원, “제2호 기업회계기준해석에 관한 검토”, 2003.

## 2. 외국 문헌



Amir, E.,and T. Sougiannis, "Analysts' Interpretation and Investors' Valuation of Tax Carrforward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6(Spring), 1999, pp. 1~33.

Ayers, B. C., " Deferred Tax Accounting Under SFAS No.109 :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its Incremental Value-Relevance Relative to APB No,11", The Accounting Review 73(April), 1998, pp.195~212.

Collins. D. W. M. Pincus and H. Xie, "Equit Valuation and Negative Earnings: The Role of Book Value of Equity", The Accounting Review(January), 1999, pp.29~62.

Givoly, D.and C. Hayn, "The Valuation of Deferred Tax Liability:

Evidence from the Stock Market", The Accounting Review  
67(April), 1992, pp.394~410.

John P. and M. Pincus, "Earnings Management: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2002.

Sansing R., "Valuing of Dererred Tax Liabi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Autumn), 1998, pp,357~363.

